

제39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3월30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 상정된 안건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 1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 1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 1
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 1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 1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 1

(15시01분 개의)

○소위원장 배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의 심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께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신 후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소위원장 배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2차관 소관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임오경 의원안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서 문체부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의료 인력·시설 등 지원 강화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과학적 훈련지원은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훈련의 보조수단입니다. 훈련지원의 효율화,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체육회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33조(대한체육회) 규정에서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36조(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과학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학 연구이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고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 일정이 아니라 자회사의 연구 일정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내일인데도 선수를 불러서 연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사례도 미국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트레이닝센터에서 일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영국체육회 자회사로 영국스포츠연구소가 있습니다.

3쪽, 국가대표 분야별 전문팀(올케어, 스페셜케어)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지원 및 선수촌 운영 예산입니다.

4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밀착지원팀 예산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19년 이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이천선수촌 내 장애인 특화 측정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따

르면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훈련원에 대한 의료인력 및 시설 등 의료 지원체계를 강구할 필요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과학 지원뿐만 아니라 의학 지원도 필수라는 의견입니다.

5쪽, 장애인스포츠과학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6쪽, 2021년 장애인스포츠과학 현장지원 인력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8명이나 2019년 총 11명이었던 것이 지원인력 중 2명을 제외하고 전원 퇴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 사업 세부 내용입니다.

각주에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계상되어 있으며 스포츠정책과학원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사업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6억 5900만 원 중 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21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비장애인 국가대표를 포함하는 스포츠과학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스포츠정책과학원의 국가대표 밀착지원팀을 분리하여 진천선수촌·이천선수촌으로 각각 통합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배현진 의원안과 임오경 의원안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오른쪽의 수정의견을 봐 주시면 체육회가 관리하는 국가대표선수촌에서의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을 할 수 있게 하되 공단의 전문체육을 포함한 스포츠과학 연구 및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즉 스포츠과학 연구 외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산업 등 제반 사안 연구 및 지원을 범조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하고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지금 스포츠과학정책연구원에서 관할하는 스포츠과학 업무를 선수촌을 관할하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이관하자는 것이 주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 그리고 전문체육·생활체육 이렇게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학문 연구를 토대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져가지고 문화기본법이 통과되고 올 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기본법에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라고 저희 문체부의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제정되면서 그 기본법에 그게 법정 법인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로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장차적으로는 스포츠기본법에 지금 공단 소속으로 있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을 법정 법인화해서 그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논의를 조금 더 진행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그러면 스포츠기본법에 담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고생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제가 2년에 걸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은 되지 않았더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2년에 걸쳐서, 국정감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상생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들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비고에서 문체부의 신중 검토를

보다 보니까 지금 신중 검토 안에 ‘대폭 후퇴가 우려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9페이지에 보면 정부의 신중 검토 안에 ‘스포츠과학 역량 대폭 후퇴가 우려됨’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역량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에 걸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을 전진하자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 왔는데 2년 동안 전진할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법정 법인화에서 싱크탱크로 해서 스포츠기본법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나누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도 이 의견에는 제가 법안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여기서 수정을 원합니다. 배현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법안을 냈는데 이것을 법을 2개로 나누면 어떤가.

대한체육회 이 법안에 일단 선수촌 관리를 5의6으로 하나 넣고요. 지금 이 안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낸 법안에는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대표선수촌 관리’를 5의6으로 하고 5의7에서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을 넣고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이렇게 해서 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정부의 신중 검토, 이 법안의 수정의견 같은 것을 다 보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현진 의원님 것 그대로 살려서 ‘국가대표선수촌 관리’를 5의6으로 하고 5의7에서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대표선수촌이라고 단정 지으면, 촌 외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촌 외 종목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동계 종목부터 시작해서 근대5종 해서 촌 외 종목들이 지금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국가대표선수촌 관리’를 5의6으로 하고 5의7에서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하게 되면, 이 법안 33조에서는 이렇게 두 법안으로 일단 저는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안에서는 제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 정책의 연구’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4호로 ‘스포츠 정책·산업·과학 지원을 위한 제반 연구’라고 해서, 현행 법을 보게 되면 ‘체육과학의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된다면 법적 근거 없이 문체부가 기능 분산, 비효율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스포츠 정책·산업·과학 지원을 위한 제반 연구’라고, 지금 현행으로는 ‘체육과학의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한다면 ‘스포츠 정책·산업·과학 지원을 위한 제반 연구’ 이렇게 해서 수정한다면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위원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고 피 일단 문체부 검토 의견의 ‘후퇴’라는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피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축적된 데이터라는 게 단계적으로 해서 중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되는 대한민국의 어찌 됐든 간에 대표적인 싱크탱크는 체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스포츠정책과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피 이 위상과 기능을 이번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하자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문체부로서는 위원님들 국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왕 스포츠기본법이 작년에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올 2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하고도 레벨을 맞추고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스포츠 발전과 지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 워딩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요, 저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타트를 해 놓고도 계속 컨트롤타워가 잘못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역할 분담을 더 못 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하고 각 종목단체에서도 못 한다고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새로이 구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기본법에 의해서 법정 법인화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예산은 또 계속해서 증액되겠지요. 그러면 밑에서는, 하단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밀착 지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밀착 지원이라는 것은 말로 풀어 나가기 나름인 거예요. 밀착해서 지원한다면…… 계속 붙어 있는 게 밀착이에요. 밀착이라는 말은 붙어 있는 거고 지원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전담팀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라면 한 공간에서 같이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영상 분석과 심리와 의·과학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관리는 대한체육회가 하고, 또 기술영상은 또 체육회 외부 전문가가 하고, 과학적 트레이닝은 과학원이 하고 외부 전문가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게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 공간에,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한다면 선수촌 안에,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네요, 3페이지 현황 및 문제점에. 과학적 트레이닝, 기술영상, 심리, 전담 매니저, 이것이 한 공간에 의·과학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파견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패러다임에 의해서 저희 체육계도 다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를 얻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과학 지원만큼은 패러다임에 의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을 한 공간에 넣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를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하든 문체부에서 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이 모든 컨트롤타워를 대한체육회가 한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정책과학원과 대한체육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게 일원화가 되어서 파견하고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하실 때 제가 정책과학원 것을 대한체육회에다 분리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게 아니라 정책과학원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과학훈련지원팀은 별도로 그 선수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대표 선수만을 관리할 수 있는 각 지원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체부라든가 공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선수가 됐든 전문 선수가 됐든 사업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포츠과학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기적인 특정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전체 국민들의 스포츠 증진이라든가 건강 증진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싱크탱크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싱크탱크는 스포츠과학원이 공단의 일개 소속 부서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코워크(co-work)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분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정책 당국자로서 문체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정말 진정한 싱크탱크로 나가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아니, 지금 준비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오경 위원**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것도 완성하려면 또 한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한 법안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놓은 겁니다. 그 2년 안에 벌써 저희가 하계·동계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 과학적 훈련 지원은 누가 해줄 겁니까? 파견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아니, 그런데 위원님, 어떤 특정 올림픽, 특정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오경 위원** 현 시스템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불화가 일어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천 장애인 선수촌에서는 두 명, 세 명인데 퇴사한 사람이 또 1명씩 나와서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00명이 넘는 장애인 선수를 세 사람이 과학훈련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특히 이천 장애인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걸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선수, 그다음에 비장애인 일반 선수, 그다음에 거기에는 엘리트 전문 선수 등등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대로 장애인 선수 따로 국가대표 선수 따로 해 가지고 이게 법제화가 되면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일정 부분에서는 해소하는 측면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이걸 해소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최근에 밀착지원팀에서 팀장님이 이직하신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밀착지원팀에서 팀장님이 이직을

하게 되면 또 대한체육회의 밀착지원팀을 파견해야 되는데 혼선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직을 하면 되지만…… 스포츠정책과학원에 밀착지원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선수촌에서 피해를 다 보고 있고 이천 장애인 선수촌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평창 선수촌도 내년이면 또 완공되지요. 아직 태릉선수촌도 존재하고 태백선수촌도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네 군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지금 계속 법정 법인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컨트롤타워를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떼어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과학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정책과학원과 대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 선수촌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6월에 법정 법인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컨트롤타워, 이 싱크탱크 최종 관리·감독은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 법인화한 곳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위원장 배현진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 지금 선수들 데이터나 연구에 관한 효율성과 일원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까를 고민하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2차관께서 지금 문체부 내에서 이미 그 사업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유병채 국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아마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시겠는데 2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병채 체육국장 유

병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과학 지원은 대표 선수든 그다음에 학생 선수든 차세대 꿈나무든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일관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아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말고 꾸준히 2년간 임오경 위원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병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천선수촌 전담 조직인 스포츠정책과학원의 밀착지원팀 41명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코로나 관계로 선수촌 운영이 많이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 외에서 비대면 훈련이라든가 또 촌 내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서 5년간 연간 평균 3000건 이상의 대표 선수 지원을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수촌의 밀착 전담팀을 체육회 쪽으로 기능을 이관한다면……

○소위원장 배현진 그 말씀은 됐고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밀착지원팀은 기존에 있던 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병채 예.

○소위원장 배현진 새로이 부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병채 예, 지금 거기에 최신 장비를, 음압 훈련기라든가……

○소위원장 배현진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병채 AI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활용한 최신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정부 측 의견과 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수정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스포츠과학 지원

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시켜서 국군장병의 체력증진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양질의 데이터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진천선수촌이랑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대표 선수촌의 느낌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와 같은 전문성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I 관련해서 스포츠정책과학원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스포츠정책과학원 외에도 AI를 스포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관들은 정말 많습니다. ETRI라고 불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국가대표 선수촌은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정책과학원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삼성, KT 등 민간에도 AI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스포츠 강국들은 올림픽위원회 또는 영국 체육회 소속으로 일체형으로 심리, 의·과학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감사합니다.

2차관님, 이 스포츠과학을 연구하는 문체부의 최고 우선순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스포츠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력 향상 문제도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전체 국민의 스포츠권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단 국가대표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활용이 되면서 종합이 되고 분석이 되어서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일단 일차적인 최우선 목적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그건 아니고

요.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이라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경기라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2년마다 열리고 하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스포츠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종합 분석이 되고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에게 효용을 준다는 그런 측면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과학원은 지금 역량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KDI라든가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가 달리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진정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장차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적을 받았는데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바뀌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좀 더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장애 유무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안이 공통적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스포츠과학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스포츠 선진국이 장애 유무를 구분해 가지고 연구나 과학 지원을 수행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형태로도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IMF 때 현재 체제로 들어간 거지요, 공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빼서 옛날처럼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있다가 IMF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단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법정 법인 됐던 것처럼 진정한 우리 스포츠 위상에 걸맞은 것을 갖기 위해서 별도 법인으로 하는데 법에 기본을 둔 법정 법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기 위원 그럼 독립 연구기관이 되면 여기에서도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있는 나중엔 국가대표 선수들의 과학 지원이 따로 내려가서 가능한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그것은 당연히 연하지요.

○임오경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소위원장 배현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지금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법안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2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33조하고 34조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선수 거기엔 ‘전문체육’을 넣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문체육을 넣어야지만 국가대표선수 중심으로 전문체육이 되는 거고.

아까 뒤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현재 과학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선수와 학생선수들을 지금 전문적 지원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한 조직에서,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같이 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선수는 제가 2년간 문체부, 정부에다가 말씀드린 게 국보급이라는 거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런 과학 데이터를 자기들이 이직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이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가대표와 학생선수는 저는 좀 분리를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선수촌 안에 그래서 국가대표선수만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을 다 바꿔 달라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게 해야지만 과학적 훈련 관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자라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허락하시면…… 체육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오해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포츠정책과학원의 밀착지원팀, 진천선수촌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48명 연구원이고요, 31억 원의 예산으로 대표선수만 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선수나 지역의 차세대나 이런 것은 지방체육회하고 연계된 지방스포츠과학센터 11개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장님, 데이터를 공유한다라고 알고 계시지요, 지금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책과학원에서 대한체육회나 이천선수촌의 데이터 공유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예.

○임오경 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지난 11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데이터 공유가 어떤 자료인지 아십니까? 엑셀 파일 딱 1장 보내서 그 안에 선수 이름 그리고 몇 %, 이게 데이터 자료 공유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대표선수를 그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공유라는 말은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 공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선수가 자기 데이터를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육정책과학원에서는 데이터 공유라고 말을 해 놓고 감독에게나 필요하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엑셀 파일 1장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국감에서……

○소위원장 배현진 체육국장님, 앉으시고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 체육국장, 하나 물어봅시다.

스포츠정책과학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지금 2차관계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포츠과학의 연구와 데이터 축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 그리고 또……

○이병훈 위원 스포츠 과학 지원, 연구 기능……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스포츠 과학 지원과 연구 기능이 분리되면 같은 내용이 중복 지원이 된다 그런 입장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스포츠정책과학원은 대표선수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아닙니다.

○이병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2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착지원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그것 동의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예,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은 대한체육회에서 밀착지원팀이 있는 공간을 사무실을 일부 폐쇄를 하는 관계로 중단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병훈 위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 어쨌든, 이유가 어찌 됐든 노력이 좀 부족했다, 동의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런데 아까 차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입장은 충분히 동의를 하되 법체계상 스포츠기본법에서 스포츠과학원을 법정 법인화하면서 전체 체계를 잡는 게 좋겠다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님하고 임오경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발의를 해 났는데 그런 법체계의 문제, 현실적으로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는데 두 분 의원께서 제안해서 오늘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음번 법안심사 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다시 처리하는 게 좋겠고, 그사이 정부 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 주세요.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좋습니다.

○이병훈 위원 적어도, 그리고 완전히 뒤로 빼면 안 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 2소위에서 다음에 할 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다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전에 대안을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안은 국가대표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동안에 문체부가 선수들의 스포츠 데이터나 관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임오경 위원님의 국정감사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도 한정된 특수 몇 개 인기종목만의 선수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들 본인의 논문에 이용한 의혹이 있다. 실제 선수들 경기력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비밀 실험이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개정안은 아마도 이 연구의 소비자이자 연구의 주체인 선수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 요청한 사항이 그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요. 저희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기조는 자꾸 조직을 늘리고 공무원을 늘리고 이런 방만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의 소비자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용하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저희에게 준 예산 문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니 스포츠과학연구원에 있는 밀착지원팀 마흔네 분이 실질적으로 임오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엑셀 데이터 1장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수들 옆에 밀착

해서 연구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겠다 이런 데 더 많은 공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까지 그것을 수정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해서 그동안 논의……

○소위원장 배현진 최대한,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문체부가 스포츠과학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십수년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학 데이터 연구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기력 향상이 최우선 목표이자 국민 건강 증진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문체부에서 해 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복지부와 또 아까 널리는 국방부까지 해서 많은 기관과 또 조직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게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선수들조차도 일차적인 효율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가장 원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연구진을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회의 안으로 밀착시켜 달라라는 현실적인 요구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기본법은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관련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병합심사를 통해서 수정의견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하고 최소한 소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이병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오.

○이병훈 위원 어쨌든 다음번 법안 심사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다시 재상정이 되기를 바라고. 만일에 그때까지 정부 측의 대안이 확실하게 안 되면 지금 그것을 토대로 의결하는 걸로 할 거니까 한 번 정도만, 서로 의견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만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배현진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제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가대표선수 스포츠 의·과학 훈련 지원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자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도 과학적 훈련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법적 근거인데 왜 지금 보류를 시켜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적 근거를 해서 대한체육회도 지금 체육정책과학원하고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으니 책임감을 부여하자라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내 것 네 것을 빼앗아 오자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법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 해서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체육회에도 역할 수행을 이행시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정책과학원 누가 컨트롤타워고 누구 것을 빼앗아 오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오경 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입법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소속 여러 가지 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법체계 내에서 일단 법기술적인 문제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문제,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런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대

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공단 스포츠과학원에 그런 유사한 법적 용어와 기능을 제시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각 공공기관들 간에 어떤 협업과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물론 기존에 그게 만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정책 당국으로서의 문체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사업과 규정이 합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된 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에 검토했던 것들을 잘 정치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진천선수촌에 있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수촌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대한체육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대표선수 거기에다가 과학·의학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알겠습니다.

올해 9월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제대회들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문체부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보면 대한체육회 예산안에는 진천선수촌의·과학 지원이라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의·과학 지원 사업을 우리 국가가 의결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선수들이 경기를 잘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력 향상이. 그것이 세금의 가치를 우리 국가가 실현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임오경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중에 33조(대한체육회) 5의6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5의7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그리고 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이 두 규정만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간

절히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 그것이 간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회한하네요.

오늘 첫 논의인데 어쨌든 신중한 검토는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임오경 위원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임오경 위원이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야. 나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체계와 전체적인 균형,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때마다 법안 개정해 놓고 또 다음에 고치고 이런 짓은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조율이 필요하단다. 물론 문체부가 잘못된 거야. 그동안에 왜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노력했다지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은 잘못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첫 심사인데 이것 자꾸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조율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 심사할 때 그것 전혀 아니다 하면 그때 해도 되지, 국가대표 지금 9월이다 뭐로 그렇게 겁박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지금 법체계 말씀하시는데요, 2차관님 법체계가 무슨 근거로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거지만요.

○소위원장 배현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다양한 공공기관 주체들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공단이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감안해서 스포츠과학이든 어떤 미션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규정화할 것이냐 사업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번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지난 2년 동안 계속 문제가 지적됐고 오늘 이 법안이 상정될 것을 알고 계셨는데 다음번에 문제를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 법체계가 아니라 정부조직 구성상 지금 어떤 조직을 어디에다가 이관하고 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조직법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국민체육법이라는 그 한 법 내에서……

○소위원장 배현진 어찌 됐든 문체부 산하에 있는 조직들에 대한 구성을 지금 문체부가 고민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예,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장 배현진 스포츠과학 연구하시는 분 특히 밀착 수행팀이 대한체육회 안으로 소속돼서 활동하신다 한들 문체부 밖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아니, 문체부의 안팎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배현진 지금 차관님께서 답변 주신 게 그 정도로 모호합니다. 임오경 위원께서 지난 2년간 꾸준히 지적하시고 고쳐 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가장 큰 취지는 스포츠 데이터과학 연구가 선수들에게 실제로 소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책상에서 탁상공론하고 그 데이터 가지고 선수들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 모르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족인 조직을 없애자라는 데 일단 저희의 첫 번째 취지가 있는데요. 보류 의견도 주셨고 여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는 게 빠르게 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용기 위원 아니, 원래 법안소위에서 표결을 하나요?

○이병훈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배현진 예.

○이병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표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서로 존중해서, 우리가 다 어쨌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소위원장 배현진 아니요, 그 표결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기자 보류하자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더 논의를 하자라는 데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여쭙려고 하는 거예요.

○이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일단 지금 이병훈 위원께서 주신 의견과 또 발의한 저와 임오경 위원님 이렇게 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의결을 짓자라고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회의 때로 보류 심사하자는 의견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당하신 말씀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또한 굉장히 숙고해서 오신 거라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마치자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부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기 위원 그 표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훈 위원 아니, 그 표결이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표결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논의를 계속해야지요, 지금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할 거냐 했으니까.

○소위원장 배현진 그러면 논의를 더 충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병훈 위원 지금 그 투표 아니었어요?

○소위원장 배현진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이 법이 당장 추진을 해야 되는 법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부 측과의 문제점 해결이 다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의견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견 드린 것도,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법체계상 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류로 보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바로 통과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스포츠과학 지원 훈련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훈 위원님과 전용기 위원님께서 이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배현진 예.

○임오경 위원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정의견을 보시면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여기는 비장애인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저희가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체계, 법률적 근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오히려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활동에 과학훈련 연구 관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만약 이 기관들이 국가대표에 대한 과학적 훈련 관리에 대해 소홀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명분이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위원님, 제가 이것은 좋은 방법을……

○임오경 위원 아니, 법체계, 법률적 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제가 발의를 해 냈지만 수정의견에 저도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년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나니까 이제야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아이러니한 대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법체계를 만들어 놔야지만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명문화시켜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법적 근거, 법체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법체계, 법률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국가대표선수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배현진 이렇게 격론이 오갈 줄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병훈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배현진 예.

○이병훈 위원 격론이 오갈 때는 대개 보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존중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개정하고 이런 것을 피해 보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취지에서……

○소위원장 배현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병훈 위원 지금 두 분이 발의하신 게 작년 11월 달 아닙니까? 발의하신 게 11월 달이고 우리가 오늘 처음 심사를 하잖아요. 발의한 의원들보다 사실 우리가 내용을 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다음번 법안 심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늦을까요? 다음번 법안 심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하자.

○소위원장 배현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거수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법안을 다음 논의로 계류시켜서 논의를 미룰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오늘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다수로 오늘 논의를 마치자라는 데 의견을 주셨고.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법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천우정 체계·자구 심사라고 하면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각 부처 간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인데 이 사항에서는 법체계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관 간 소관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5분간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좀 나누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배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과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법안소위 위원님들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논의를 또 따로 했는데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문체부와 저희 상임위 모두가 선수들의 경기력 증진과 국가 체육의 발전 여기에는 다 이견이 없는 거고 잘 되자는 데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이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것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훈 위원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스포츠정책과학원이 본래적 기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의 관리를 위한 또 그 기능도 유지…… 스포츠정책과학원 중에 일부 업무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이 아까 수정 제안한 그것을 오늘 거기까지 동의를 하고 문체부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른 데 스포츠기본법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기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본 상임위 들어가서는 이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이게? 한번 여쭙보려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 천우정 전체회의에서도 동의를 통해서 수정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때 당시에 문체부에서도 입장을 좀 더 들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이병훈 위원 그렇지, 전체회의에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소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는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문체부 측 의견을 들어 보고 수정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별지로 해야 되나요? 추가 의견을, 부대 의견을 좀 붙여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그런데 위원장님, 이 소위에서 의견이 일부 수렴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이렇게…… 특히 정부 측에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그동안에 스포츠 행정을 진행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어떤 임무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소위가 첫 번째 소위입니다. 기존에도 여야 간 이견이 있거나 정부 쪽에서 이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측에서는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잘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주셨다시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공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되기를 바란다 고 지적사항 주신 것들을 정부가 섬세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형두 위원님 아직 의견 안 주셨는데 따로 말씀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사실 나는 문체부 이야기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무슨 뭐 떼서 체육과학 뭐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선수들이 자기 선수 일정이 있는데 체육과학원이 과학측정한다고 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과학원이 선수 일정도 봐 가면서 선수 일정에 맞게끔 해서 과학측정 업무도 하고 해야지,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이, 임무에 대한 분명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료주의고 이런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더구나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이 있고, 과학측정이라는 것이 측정과 그것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국민체육 진흥이라고 한다면 그건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꼭 자기들이 지휘해서

무슨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나요? 빅데이터는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방법으로, 애플워치를 주면 그걸로 다 빅데이터가 수집되는데, 나는 체육과학진흥원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이 저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측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전용기 위원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소위원장 배현진 예, 전용기 위원님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아까 소위 부대의견으로 내자고 했던 것에,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견도 있고 정부 측의 이견도 있었으나 지금 소위에서는 통과시키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이라든지 정부 측의 의견을 더욱더 심도 깊게 들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붙였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임오경 위원님의 수정 대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4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2019년 4170만 명이던 것이 2020년 4673만 명, 2021년에는 5056만 명으로 2년 사이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의 증가와 골프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 최근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이용료 인상, 편법 운영(유사회원권, 부킹우선권)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만은 대중골프장에 대한 상대적인 세제·정책 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하는바, 일률적인 현행 회원제·대중골프장의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골프 대중화에 부합하는 골프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용가격 등의 분류기준 및 방식이 필요합니다.

15쪽, 골프장업 세부 종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골프장업을 회원모집 여부라는 형식적인 기준 이외에 이용료 등의 대중화 요건에 기여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바, 골프 인구의 증가 및 골프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18쪽,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 하단에 보시면 1999년 이후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분리 운영하게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고 최근 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으로 일부 전환한 골프장이 늘어남에 따라 개정안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골프장의 분리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고요,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감사합니다.

소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21쪽,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 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2쪽, 선수·심판의 결격사유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타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을 반영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더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고 유예기간을 그 결격 기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같은 취지의 여권법 등 28개의 법률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이것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지금 현재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정부 입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히 제6항은 일반법과 달리 정부가 전체 법률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 문체위 소관 법률 2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괄해서 제출한 법안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문체부 2차관 소관 내용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24쪽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입니다.

25쪽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에 관한 안입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평가·지원 등 시·도지사의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고 행정수요가 크지 않은 타 기초자치단체와 구분하여 특례시의 차등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28쪽, 부칙입니다.

수정의견에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였으나 행안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이 통과되면서 부칙을 1년으로 개정하였고 우리 위원회 1소위에서도 1년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주택법에 해당하는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부칙의 시행일 경과규정, 수정의견 1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 타당하고요. 지금 입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정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특레시가 지금 4개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특레시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원시입니다. 제가 창원시마산합포 국회의원인데 정말 적절하고, 정부에서도 오늘 이렇게 후련한 답변을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보다 훨씬 큰 사이즈고 해안선만 한 400km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경상남도라는 도 전체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레시라고 이름만 바꿨지 별다른 권한이 없어서 뭘 신속하게 의사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관님께서 시원한 답변 해 주시고 법안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 특레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향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끌어 온 관광진흥이 아마 이런 권한 위임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정부가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마무리가 훈훈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기 위원**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예, 전용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해당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라고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또는 개선권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개선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고 광역지자체는 간접적인 개선권고만 가능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대로 광역지자체가 직접 개선할 경우 지자체의 권한에 간섭하는 상황에 따라서 특레시는 개선만 그리고 지자체는 개선권고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전용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

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오영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배현진** 이 밖에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체부 오영우 2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자리 함께하신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분들,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배 현 진 이 병 훈 임 오 경 전 용 기  
최 형 두

#### ○참가 위원(2인)

이 상 현 이 용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전 문 위 원 천 우 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 관 오 영 우  
체 육 국 장 유 병 체